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44
2025.8.25.



이주의 초점

‘미 관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에 1,022개로 확대 … 2차 추가 예고에 수출업계 난감

관세행정 안내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중간재 규정

판례 동향

수입 후 반품이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품목분류동향

품목분류해설

반도체 공정 중 CMP 공정에 사용하는 Polishing Pad의 품목분류

품목분류 M.A.P.

하이볼 분류 사례

세번 바로잡기

마사지볼

상식 밖의 상품학

뜨거운 햇빛에 늘어나는 양산 쓰는 남성들

법령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8월 25일(통권 제2144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미 관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에 1,022개로 확대···
2차 추가 예고에 수출업계 난감

06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10 **관세행정안내**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중간재 규정

15 **질의응답사례**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례동향

18 **관세판례해설**

수입 후 반품이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품목분류동향

31 **품목분류해설**

반도체 공정 중 CMP 공정에 사용하는 Polishing Pad의 품목분류

41 **품목분류 M.A.P**

하이볼 분류 사례

46 **세번 바로잡기**

마사지볼

48 **상식 밖의 상품학**

뜨거운 햇빛에 늘어나는 양산 쓰는 남성들

최신개정법령

50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53 **훈령**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54 **행정예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미 관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에 1,022개로 확대···2차 추가 예고에 수출업계 난감

무역협회,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입증 등 사전 대비 강조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관련해 관세부과 대상 407개 품목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부과 품목이 615개에서 1,022개로 늘어나 우리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파생'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목록에 407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관세부과는 전날인 18일(미국 동부 표준시) 0시 1분부터 즉시 시행됐다.

새롭게 추가된 파생제품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추가 절차에 따른 조치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2일 미국 기업과 산업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파생제품 관세 대상 500개 품목을 신청받아 이 중 이미 232조 조치나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을 추가했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풍력 터빈과 그 부품 및 구성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 및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른 제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22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강철·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232조 관세 50%가 부과되고, 함량을 제외한 제품 가치에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간 합의한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추가된 주요 품목 가운데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변압기, 냉장·냉동고 등 가전제품, 건설기계와 자동차부품 등이다. 이들 품목의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2024년 기준 118억 9,000만달러로 미국의 해당 품목 대세계 수입의 약 5.8%를 차지했다.

추가된 주요 품목 중 변압기는 10,000kVA 초과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한 변압기 및 부품 총 11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 중 변압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강판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미국 내 생산이 제한적인 품목으로 대체가 어려운 만큼 관세부과 영향으로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단일 품목 중 가장 큰 수입 규모를 차지하는 가전제품인 냉장·냉동고는 철강 파생제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제품에도 추가됐다.

철강 함량이 높아 관세 부담이 우려되는 건설기계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기타 자동차부품(HTSUS Code 8708.99.81), 엔진 부품(HTSUS Code 8409.91.50) 등 기존 자동차부품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부품이 철강 파생제품에 다수 추가됐다.

특히 K-뷰티 인기를 등에 업고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일부 화장품 용기의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미국 업계 요청과 미 상무부 직권으로 232조 관세 대상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상무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포함 절차에 따라, 일반 대중이 제품 포함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세 차례의 연간 기간이 있다"며, "다음 기간은 9월에 시작되며 연방관보에 공고된다"고 말했다.

상무부가 밝힌 세 차례의 연간 기간은 1월, 5월, 9월로 2차 추가 절차는 다가오는 9월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8월 18일 보고서를 발표한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이번 추가 발표에서 확인되듯, 미 업계가 요청할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이나 수입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대상 품목의 추가 요청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가전제품 사례와 같이 상무부 직권에 의한 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7월 1일부로 추가 절차가 개시돼 진행 중이며, 향후 구리와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파생제품 추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기업은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입증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공급망이 복잡하거나 다국적 조달이 이뤄지는 부품의 경우 관련 자료 확보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사용된 알루미늄 제련국, 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무역협회는 미 상무부는 모든 파생제품 추가 요청서를 공개하고, 14일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하는 만큼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 기업은 요청서 게재 시점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미 업계의 신청에 대한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해 의견 수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부당한 관세 확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상무부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추가 품목과 관련해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공개했다.

관세청은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이행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영업자는 수입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시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수입신고서에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에콰도르 수산업정보(KORTA)·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양식)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0.3%를 차지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기재부, 불공정 무역 적극 대응 위한 '반덤핑팀' 신설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8월 21일 기재부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했다고 알리며,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가 작년 6건으로 소폭 증가하다 미국 상호관세가 부과된 올해 들어 8월 현재 8건으로 급증했다.

신설된 반덤핑팀은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 연도별 덤핑방지관세 부과 현황(부과 시작 연도 기준) ●

연도	품목	공급국	부과기간	
2021년 (4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국, 인니, 대만	2021.9.15.~2024.9.14.	3년
	H 형강	중국	2021.3.30.~2026.3.29.	5년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중국	2021.5.3.~2026.5.2.	5년
	PET 필름(1)	대만, 태국, UAE	2021.12.24.~2026.12.23.	5년
2022년 (5건)	폴리에스테르 완전연신사	중국	2022.1.6.~2027.1.5.	5년
	플로트 판유리	중국	2022.4.8.~2027.4.7.	5년
	부틸글리콜에테르(1)	미국, 프랑스	2022.7.26.~2027.7.25.	5년
	부틸글리콜에테르(2)	사우디	2022.9.5.~2025.9.4.	3년
	사진플레이트(더블레이어)	중국	2022.10.25.~2027.10.24.	5년
2023년 (5건)	폴리아미드 필름	중국, 태국, 인니	2023.2.27.~2028.2.26.	5년
	이음매 없는 동관	중국, 베트남	2023.3.2.~2028.3.1.	5년
	수산화알루미늄	중국, 호주	2023.4.28.~2028.4.27.	5년
	PET 필름(2)	중국, 인도	2023.5.8.~2028.5.7.	5년
	페로실리코망간	베트남, 인도	2023.7.21.~2028.7.20.	5년
2024년 (6건)	도공인쇄용지	일본, 중국, 핀란드	2024.3.18.~2029.3.17.	5년
	백색 시멘트	이집트	2024.4.30.~2029.4.29.	5년
	(활엽수) 합판(1)	말련	2024.7.2.~2029.7.1.	5년
		중국	2024.7.2.~2029.7.1.	5년
	(침엽수) 합판(2)	중국	2024.7.2.~'2029.7.1.	5년
	합판(3)	베트남	2024.7.2.~2029.7.1.	5년
	PET 수지	중국	2024.11.30.~2029.11.29.	5년
2025년 부과 (8건)	OPP필름	중국, 인니, 태국	2025.4.25.~2030.4.24.	5년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국, 인니, 대만	2025.5.16.~2030.5.15.	5년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베트남	2025.7.9.~2030.7.8.	5년
	석유수지	중국, 대만	2025.8.1.~2030.7.31.	5년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중국	2025.3.25.~2025.9.5.	6월
	중국산 탄소강 후판	중국	2025.4.24.~2025.11.23.	7월
	차아황산소다	중국	2025.6.21.~2025.10.20.	4월
	파티클보드	태국	2025.7.4.~2025.11.3.	4월
	※ 무역위원회 조사 중 7건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9월 1일부터 시행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올해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30원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하 전 탄력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인하 전 탄력세율은 각각 820원, 581원, 203원이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021.11.12. ~ 2022.4.30.	2022.5.1. ~ 6.30.	2022.7.1. ~ 12.31.	2023.1.1. ~ 2024.6.30.	2024.7.1. ~ 10.31.	2024.11.1. ~ 2025.4.30.	2025.5.1. ~ 10.31.
		△20%	△30%	△37%	휘발유 △25%	△20%	△15%	△10%
					경유 △37%	△30%	△23%	△15%
					부탄 △37%	△30%	△23%	△15%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738(△8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494(△87)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173(△30)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8월 29일부터 미국행 소액소포 면세 폐지

미국이 소액소포를 대상으로 한 면세(De Minimis) 혜택을 8월 29일부로 폐지함에 따라 국제우편은 당분간 ‘EMS 프리미엄’으로만 보낼 수 있게 됐다.

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 변경에 따라 국내에서 보내는 미국행 국제우편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오는 8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26일부터 EMS(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각각 중지(접수일 기준)된다. 해당 조치는 8월 29일 0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되는 미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5월 2일 중국발 소액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 것에 이어 8월 29일부터 이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역통상조사실에 따르면, 발효일부터 6개월간은 국가별 관세율에 따른 종량세(물품당 80~200달러)와 종가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6개월 이후에는 종가세(IEEPA 실효관세)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EMS 프리미엄(민간제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전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지만, 수취인(받는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기존 EMS 보다 고중량(4.5㎏·개인고객 기준) 물품은 저렴한 요금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4.5㎏ 미만의 저중량 물품은 요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으로 우편물 발송을 계획한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선물·상품)를 정확히 기재하고, 송품장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 ··· 반도체·선박 수출이 선도

올해 7월 우리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8월 18일 발표한 '2025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달러로 66억달러 무역수지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에 한몫한 품목은 반도체와 선박으로 반도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49억 900만달러를 수출해 30.6%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21억 1,5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승용차는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증가했으며,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한 103억 3,000만달러를 기록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중국은 3.0% 감소한 110억 4,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입은 소비재와 자본재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원자재에서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한 542억달러로 나타났다.

수입국별로는 중국(4.0%)·유럽연합(15.4%)·대만(15.2%)·베트남(15.4%)·호주(38.6%) 등은 증가했으며, 중동(△10.3%)·미국(△19.0%)·일본(△0.1%) 등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6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77억 8,000만달러, 미국 39억 2,000만달러, 베트남 26억 4,000만달러, EU 1억 7,000만달러 흑자를, 중동 △50억 7,000만달러, 일본 △16억 3,000만달러, 호주 △14억달러, 중국에서 △13억 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하구현 기자 |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중간재 규정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베트남 FTA
질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인 경우에도 중간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한·베트남 FTA 중간재는 모든 원산지 결정기준에 적용 가능하며, 해당 협정에서는 중간재 사용을 위한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중간재

1) 개요

FTA를 적용하려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을 말한다.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는 대부분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중 하나로 최종물품의 생산자가 여러 가지 원재료를 구매해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간재를 자가생산(역내생산) 시, 해당 중간재의 HS Code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재료(역내산)로 취급한다는 규정이다.

완제품 생산에 사용된 자체적으로 생산된 원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FTA상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목적상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중간재 규정의 활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협정별 중간재 규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상 적용 범위나 중간재 지정의무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중간재 규정

중간재 규정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데 일부 원재료(중간재)를 직접 제조해 후속 공정에 투입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수출 대상 완제품 제조공정 과정에서 원재료(반제품, 중간재)를 구매하지 않고 직접 제조해 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수취해 물품을 구매

하는 원재료(반제품, 중간재)를 원산지 재료로 판단해 원산지 판정 시 해당 원재료의 가격(납품받은 가격) 모두를 원산지 재료비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규정을 둬 자체 생산 시 중간재 생산에 소요된 비원산지 재료뿐 아니라 이윤 등에 대해서도 모두 역내산 부가가치로 볼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계산식에 따라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인 경우 원산지를 그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로 하는 기준으로 결국 원산지·비원산지 원재료 및 완제품의 가격정보를 통해 원산지 판정이 이뤄진다. 그중에서 실무상 중요한 원재료의 가격정보는 비원산지 재료비인데, 원산지 판정 과정에서 중간재 규정을 활용하면 비원산지 재료비의 가치를 줄이고 반대로 원산지 재료비의 가치는 올리며 부가가치기준을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간재 규정은 대부분 FTA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한·페루 FTA의 경우 중간재(자가생산된 재료) 규정을 명시적으로 둬 운영하고 있으며, 한·EU, 한·베트남 FTA 등은 명시적인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ASEAN FTA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경우 중간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ASEAN FTA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는 한·싱가포르의 규정을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 국내 관세청에서는 수출 시에도 한·ASEAN FTA 활용 시 중간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하나 한·싱가포르 FTA를 준용하는 국내 「FTA관세법 시행규칙」 규정은 양 당사국 간 합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에는 적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중간재를 '지정(designated)'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에서는 중간재 지정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한·ASEAN FTA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의 중간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정 또한 중간재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중간재에 대한 지정을 언제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규정된 바 없으나, 중간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중간재에 대한 지정 후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된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는 역내가치 포함비율 산출에서 중간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의 생산자가 상품을 중간재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생산자는 중간재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해 수출국 관세당국이 이를

검사·확인 후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당연한 전제로서 중간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전 단계에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다른 협정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중간재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간재에 대한 지정은 판매 실적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관세청의 질문 & 답변 사례에 따르면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반제품이 따로 판매된 실적이나 다른 조건이 없어도 중간재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과정에서 생산되고, 독립된 품목분류가 가능한 원산지 재료라면 중간재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규정상 안내사항과는 달리 FTA 원산지관리 실무상 판매되지 않은 중간재에 대해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동종·동류물품을 찾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중간재를 적용하는 업체의 경우 중간재 단계에서 수불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원가정산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중간재를 거쳐 완제품이 생산되는 생산구조를 가진 생산자의 경우 이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가 제조공정을 거치며 여러 단계의 어셈블리(assembly)로 구성되고, 그 단계가 복잡하고 많을수록 중간재 활용 가능성이 크다. 다만 BOM 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출제품 단계에서 외부구매 원재료 단계까지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장 간 이전(대체), 사업부 간 내부(대체)거래가 발생하며, 각 공장 혹은 사업부 간 관리하는 개별 BOM을 조합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중간재 규정의 활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재는 자가 생산, 제조, 가공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또한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Code, 소요량, 단가, 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 시 고려된 경우 필수 기재)를 레벨(Level)별로 관리해 중간재가 중복 적용돼 부가가치비율 계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외에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치 등의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은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는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인 경우에도 중간재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간재 규정은 부가가치기준에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협정에 중간재를 부가가치기준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한·베트남 FTA 중간재 규정

한·ASEAN FTA 및 한·인도 CEPA를 제외한 다른 협정에서는 중간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중간재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상품)에서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재 규정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활용되며, 부가가치기준에 한해서만 중간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협정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EU FTA의 경우 중간재가 역내가치비율 산정 시에 한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과 상관없이 활용 가능하다. 한·EU FTA에 관한 관세청 질문 & 답변 사례를 살펴보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 제1항 가목은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이번 호의 대상인 한·베트남 FTA에 대해서도 한·EU FTA와 동일한 취지의 답변이 있다. 관세청에서는 한·베트남 FTA 중간재 규정은 모든 원산지 결정기준에 적용 가능하며, 한·베트남 FTA에서는 중간재 사용을 위한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베트남 FTA 제3.3조의 중간재 규정상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로서 취급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 상품에 소요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Roll UP만 규정할 뿐 다른 상품 생산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어야 한다는 등 별도의 추가 요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베트남 FTA의 중간재 규정은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상품)에 규정돼 있으며 결국 불완전생산품에 대해 중간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에 중간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FTA의 경우에도 부가가치기준뿐만 아니라 세번변경기준에서도 중간재 규정이 활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사례(2017 국제원산지세미나)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인 은 스크랩(제7106호)과 완제품인 은 파우더(제7106호)의 HS Code가 같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 판정이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은 스크랩을 화학공정을 통해 질산은(제2843.21호)으로 제조한 뒤 다시 은 파우더를 생산하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제4.4조 중간재 규정에서 "상품의 생산자는 역내가치 포함 비율(부가가치기준)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그 중간재가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역내가치포함 요건을 적용받는 다른 자체생산 재료가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됐을 때 그 다른 재료 자체가 중간재로 지정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재 규정 등은 지정 요건, 적용 범위, 가격산정 등 각 협정의 규정을 확인해 정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을 개명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정했는데, 수취인 정보가 부정확·미완성이라고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통관 시 수하인 성명과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가 불일치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가 없는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수취인 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는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명한 성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했다면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취인의 성명(개명 후) 및 변경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담당 특송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특송업체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우측 상단 화물진행정보 > M B/L - H B/L 체크' 후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특송업체명과 연락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품목분류 / 렌즈가 장착된 아이웨어의 HS Code

렌즈 컬러는 투명하되 도수는 없으며, 자외선·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갖춘 아이웨어의 품목분류가 궁금합니다.

먼저,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9004호에 분류되며, 세분류로 문의하신 물품이 렌즈의 색깔이 없는 자외선 차단 안경이라면 '기타'의 '기타'로 봐 제9004.90-9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렌즈 색깔이 있다면 제9004.10호의 선글라스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용이나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며 ;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국내 품목분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결정 세번	제9004.90-9090호에 분류(개정 후 : 제9004.90-9000호)
품명	UV BLOCKING GLASSES(자외선 차단 안경); VAPOR; 51□21-148
물품 설명	아세테이트 소재의 전면부에 경첩으로 조립된 다리가 부착된 안경테에 투명색의 렌즈가 장착된 형태의 안경. 렌즈에 시력 교정 도수는 없고, 자외선 차단 기능만 있는 패션 안경으로 렌즈의 색상이 투명해 실외에서 햇빛의 눈부심은 미차단
구성 성분	전면부(프론트) : 아세테이트, 다리(템플) : 아세테이트, 렌즈 : CR39, UV400* 코팅 UV 100% 차단 렌즈 * UV400 : 400nm 이하의 파장인 자외선(UVA, UVB)을 모두 차단
분류 사유	관세율표 제9004호에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규정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용이나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며;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한다. … <중략> … 보호용 안경에는 일반적으로 평면이나 만곡(彎曲)된 보통의 유리(광학적 연마나 착색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안전유리·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폴리스티렌 등]·운모·금속[와이어 거즈(wire gauze)나 세공을 낸 판] 등을 사용한다. 보호용 안경에는 선글라스·등산이나 동계 스포츠에 사용하는 안경, 항공용·자동차용·모터사이클용·화학자용·용접공용·주조공용·모래분사공용·전기기술자용·도로공용·채석공용 등의 고글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우선, 관세율표 제9004.10 소호에 ‘Sun-glasses’를 분류하고 해설서에 선글라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dark glasses that you wear to protect your eyes from bright light from the sun(by Cambridge Dictionary)’, ‘강렬한 햇빛 따위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색깔 있는 안경(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색깔이 없는 자외선 차단 안경으로 선글라스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본 물품은 색깔이 없는 무도수 UV차단렌즈가 장착된 패션용 안경으로 ‘기타용 안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9004.90-9090호에 분류함.

원산지 / 원산지 표시

종이포장지, 리본 등 제품 포장을 위한 부자재를 수입하는데, 각 부자재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는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2조 제8호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포장 부자재(종이 포장지, 테이프 등)가 수입 후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수출 / 임대수출 관련

해외 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물품을 무상 수출했는데, 계약 만료 전 구매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수출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서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당시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조건이면 거래구분 '33'으로, 소유권 불이전 조건이면 '39'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무상 거래라면 결제방법 부호를 무상거래 기호인 'GN'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 목적으로 수출했던 물품이 계약기간 만료 전 현지에 매각(또는 폐기)돼 사용하고자 한다면, 거래구분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구분은 '39'에서 '11'로 정정하고, 매매계약서 또는 외화입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존 수출신고했던 세관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입 후 반품이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611(2023.9.7.) 대상판결 -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Ⅰ. 머리말

현행 신고납세방식 하에서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과 세율 등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소홀히 해 세액 탈루가 발생한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는 과세물건에 대한 새로운 사정발생, 예컨대 멸실,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과세요건[1]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반송한 경우에는 관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약반송에 따른 환급에 있어서도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뿐이며 이미 확정된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 불일치물품에 대해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② 계약 내용과 다를 것, ③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 ④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다시 반입할 것 등 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통상 ①, ②, ③의 요건은 충족하나 ④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송을 했음에도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대상판결도 ④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지 못한 사건이다.

이번 호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이후 새롭게 발생한 과세물건의 사정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 및 계약 불일치물품의 관세환급 요건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검토하기로 한다.

Ⅱ.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의 화장품 제조사들에게 납품하기 위해 일본 수출자로부터 화장품 원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HSK 제3505.10-1000호(기본세율 8%)인 덱스

1) 과세요건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돼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크게 4가지가 있는데 ① 과세물건, ② 납세의무자, ③ 과세표준, ④ 세율이 있다.

트린으로 분류해 수입신고하고, 그에 따른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피고(세관장)는 원고의 수입통관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제조공정도 등(Certificate of composition, Certificate of origin, Manufacturing process of Rheopearl)을 제출받아 제조공정 및 구성성분표를 심사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505.10-9090호(WTO 미추천세율 385.7%)를 적용해 수정하면서, 원고에게 적용세율 차에 따른 부족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에게 관세 등 부족세액을 과세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관세심사위원회는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세액으로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관세청장은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1.5kg씩 소분해 분석한 결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화장품 제조사들에게 납품하지 않고 자사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세관을 통해 이 사건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재수출해 이를 반품했다.

Ⅲ.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수입된 이후 사용, 소비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다가 2020.11.13.경 원상태 그대로 재수출됐다. 이 사건 물품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2021.5.24.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부족세액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Ⅳ. 법원의 판결요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부족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조세채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됨으로써 당연히 성립한다. 즉 일정한 시점에 특정인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하게 되면,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화폐 또는 수량으로 측정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2)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이 품목분류상 HSK 제3505.10-9090호로 분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이 품목분류상 HSK 제3505.10-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관세법」은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채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자, 과세물건이 확정됨으로써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그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돼 당연히 성립하고,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인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2) 다만, 피고가 관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적으로 성립한 관세채무의 내용을 절차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관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 즉,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계되는 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되, 보충적으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했을 때 실체법적으로 이 사건 관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했고, 그에 따른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을 때 절차법적으로 이 사건 관세채무가 확정됐을 것이나, 원고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어 보충적으로 피고가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관세채무가 부과과세방식에 의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법령을 적용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관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의 법리를 오해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로 수출해 반품함으로써 수입물품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입신고 시점 당시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체적으로 성립된 관세채무가 절차적으로 수입자의 납세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써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관세채무의 성립 시점인 수입신고 당시인 점, 「관세법」 제106조 등의 관세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입신고 이후의 재수출이 이미 성립한 관세채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수입신고 이후 과세물건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는 관세행정의 불안과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관세의 신고납부 후 이뤄지는 보정, 수정, 경정 등의 절차는 「관세법」 제2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가능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물품의 국내 현존 여부는 과세요건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V. 검토 의견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시기

관세는 물품이 국경을 통과해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성립과 확정시기는 「관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관세법률관계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고 국가가 관세를 징수할 채권을 가지게 되는 관계를 관세채권·채무관계라 한다. 관세채권·채무관계는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한 관세채권·채무관계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거쳐 청구·납부된다.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된 관세채권·채무관계는 채무의 이행(납부), 제척기간 경과 등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소멸된다.

관세채권·채무를 성립시키는 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의 네 가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과세물건이란 조세법이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이는 세원(稅源)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납세의무 성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물적 기초를 의미한다.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 된다.

관세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은 제조단계부터 운송·보관·통관·판매되는 동안 수량이나 중량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부패 등으로 성질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또한 국제시세의 변동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어느 시점의 물품 상태를 가지고 과세를 하느냐의 문제가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문제다. 과세물건이 확정되면 다른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등도 동시에 확정돼 관세채무가 발생·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관세채권·채무의 성립시기'라고도 한다.

관세는 「관세법」 제241조(수출입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관세법」 제16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다. 즉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돼 수입되면 그 상태대로 우리나라의 통제 아래 놓이고 보세화물 관리 등에 대한 각종 의무가 발생하지만, 관세채무가 발생하는 과세물건으로서의 확정은 수입신고 시점이 되는 것이다. 수입신고 시점을 과세물건 확정시기로 한 것은 이 시점이 화주가 수입통관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또한 세관이 물품검사를 하는 가장 가까운 시점이란 점 등으로 가장 적당한 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3)]

3) 김기인·신태욱, <한국관세법>, 2024. 91면.

2.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고지제도

관세의 납세의무 확정은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관세의 확정 방식에는 크게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 두 가지가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관세의 과세가격)과 세액을 계산해 자기의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다. 과세관청인 세관장의 개입 없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으로 관세채무가 확정되지만, 이 제도 아래서도 세관장의 관세채권에 대한 조사·확정권이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제2차적·보충적 지위는 계속 유지한다. 즉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는 했지만 그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등 정당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제2차적 지위에 근거한 경정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납세신고세액이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제도가 정정, 보정, 수정 및 경정제도다. 이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잘못을 발견해 바로 잡는 제도가 정정, 보정, 경정청구제도이며 세관장이 이를 바로 잡는 제도가 경정제도다.

부과고지제도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 그 내용의 확정권을 세관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일부 물품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하기보다는 세관장이 일괄적으로 관세액을 결정해 징수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액의 우편물이나 대량의 물품이 일괄적으로 통관되는 경우, 세관이 직접 관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것이 개별 신고납부보다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관세납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의 경우 탈세 또는 밀수를 방지하고 관세행정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세관이 직접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품목분류나 과세가격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적인 통관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고지제도의 비교 ●

구분	신고납세제도	부과고지제도
개념	납세의무자가 관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	세관장이 관세액을 결정해 부과고지
확정주체	납세의무자(수입자)	세관장
절차	수입신고시 납세신고 → 세관장의 수리 → 납세의무자의 납부	세관장의 과세액 결정 → 납부고지서 발송 → 납세의무자의 납부
납부기한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적용원칙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적용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특정물품에 적용
세관장 역할	원칙적 사후심사(일부 사전심사)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통보

구분	신고납세제도	부과고지제도
납세의무자 책임	정확한 신고의무, 세액 오류 시 가산세 부담	고지서에 따라 납부, 세액 오류 시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가능

3. 관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

관세 성격 중의 하나인 '소비지국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은 국제 무역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주로 부가가치세(VAT)와 관련해 설명되지만 관세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은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세 가지의 취지가 있다.

첫째, 해당 원칙의 핵심적인 취지로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중립성 확보에 있다. 국제거래에서 동일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해 불합리하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은 이를 방지해 국제 무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가 물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조세 중립성'을 보장한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수입된 재화가 동일한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해 국내 산업 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수출을 촉진하는 데 있다.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국에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수출국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국내산업 보호 및 과세 형평성 유지에 있다.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물품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고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각 국가는 자국의 산업보호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생산지국과세원칙(Origin Principle)의 경향이 강했다. 즉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 시에도 해당 세금을 포함해 내보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지국과세원칙은 국제 무역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그중 하나가 이중과세 문제였다. 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때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세금이 부과되면 이중과세가 발생해 상품가격이 불필요하게 높아지고 무역이 위축될 수 있다.

셋째, 경쟁 왜곡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수출 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등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세계경제의 재건과 자유무역확대를 위해

제정된 GATT는 국제무역에서 조세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원칙을 수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지국과세원칙이 중요한 국제적 원칙으로 확립됐다.

1950년대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제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0% 세율)'을 적용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관세와 별도로 수입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철저히 실현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재화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TO(세계무역기구)는 국제 조세 및 무역규범을 정립하는 데 있어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주요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디지털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과 글로벌 기업의 출현은 기존의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다. 예컨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기업들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기존의 과세원칙으로는 디지털 기업들의 이윤이 실제로 소비되는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되는 '세원 잠식 및 이윤 이전(BEPS)'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와 G20을 중심으로 'BEPS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그 결과로 디지털세 부과 시도로 이어졌다. 이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물리적 실체가 아닌 '소비가 이뤄지는 시장 소재지'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이와 같이 소비지국과세원칙은 디지털 경제의 도전 속에서 '물리적 소비'를 넘어 '디지털 소비'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며 적용 범위와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관세행정에서 소비지국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돼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될 목적이라면 그 수입물품은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소비가 이뤄지는 곳(즉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동안 관세부과는 유보된다. 이는 외국물품이 아직 국내에 완전히 소비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주가 수입신고할 때는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이 이제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수출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소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다.

이 외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관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출될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종 생산된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되므로, 해당 제품에 포함된 수입 원재료에 부과됐던 관세를 돌려줌으로써 “소비지국(해외)에서 관세를 부담하게 한다”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환급이 없다면 수출물품에 관세가 포함돼 가격이 비싸져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처럼 관세행정은 물품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소비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함으로써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4.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관세환급 요건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입물품의 관세환급도 관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관세는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계약 내용과 상이해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물품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비되거나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경제적 근거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위약환급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조세 형평성 실현

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특정 품질, 규격, 수량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수입자가 의도하거나 기대했던 가치만큼의 물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가 본래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납세자는 계약과 다른 물품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없는 관세를 낸 것이므로, 이를 돌려주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다. 만약 환급 제도가 없다면, 수입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더해 이미 낸 관세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2) 원활한 국제 무역 및 통상 활동 지원

국제 무역에서는 물품의 생산과정상 오류, 운송과정상 변질,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무역리스크의 하나다. 만약 이러한 불량, 하자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수입자는 계약과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안고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 관세 환급제도는 수입자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해 무역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국제 무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 세관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성 도모

세관은 국내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은 사실상 국내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반품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세관은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유통되지 않을 물품에 대해 세금을 유지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불필요한 행정적 마찰을 줄이고, 수입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세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계약 내용이 다른 물품을 수입하고 다시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모두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관세법」 제106조에서는 아래의 관세 환급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그 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관세 환급은 이미 관세나 내국세를 납부한 물품에 대해 이뤄지므로, 당연히 수입신고가 수리돼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 내용과 다를 것

수입된 물품이 계약서, 사양서 등과 비교해 품질 불량, 규격 상이, 수량 부족 등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확인서, 클레임 서류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것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국내에서 사용, 가공, 소비 등으로 인해 수입신고 당시와 다른 성질이나 형태를 가지게 되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세관은 수입신고된 물품과 환급 신청하는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결함 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 또는 조립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④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다시 반입할 것(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이

나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5. 계약사양과 일치하지 않은 물품의 관세평가(WCO 해설 3.1)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은 이미 납부된 관세 환급에 관한 규정이며, 이는 '관세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다. 즉,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서 환급을 받는 것은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에 따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며, 당초에 성립·확정된 과세가격을 '0'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이 수입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당시의 거래 형태와 해당 불일치가 가격 결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WCO 해설 3.1에서는 계약 사양과 일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해설에 따르면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판매가 없다면 거래가격은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평가의 제2방법 이하 순차적인 방법을 통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2방법과 제3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들은 사용할 수 없다. 제4방법의 경우 하자가 있는 물품을 수입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제5방법 역시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한 생산원가를 산출한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제6방법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원고(수입자)는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505.10-9090호(WTO 미추천세율 385.7%)로 수입신고 해야 하나, 제3505.10-1000호(기본세율 8%)로 잘못 수입신고한 귀책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1.5kg씩 소분해 분석한 결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국내 화장품 제조사들에게 납품하지 않고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세관을 통해 이 사건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재수출해 이를 반품했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이다. 현행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가격과 품목번호를 올바르게 신고해야 한다.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세액을 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통해 4대 과세요건이 확정되면 수입통관 후 수입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예컨대 보관창고 화재발생으로 수입물품이 멸실된 경우 이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한 세액을 소급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즉

수입통관 후 과세물건의 멸실, 반환, 폐기[4] 등의 새롭게 발생한 사정은 이미 수입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4대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경우 확정된 과세요건이 과연 적법하게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물품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은 품목분류와 관세감면 및 관세평가다. 첫째 품목분류와 관련해서 계약 내용이 다른 이 사건 물품(하자가 있는 물품)을 정상적인 물품(하자가 없는 물품)이 분류되는 HSK 제3505.10-9090로 여전히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다. 원칙적으로 품질 하자가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물품의 성분에 변화를 줘 그 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품목분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원고는 쟁송과정에서 품목분류를 쟁점화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둘째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위약환급)에 따른 관세환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이 사건 물품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② 계약 내용과 다를 것, ③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 등 3가지 요건에는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④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다시 반입할 것'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해 결국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보면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상 매도인은 계약적합성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물품검사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매수인은 물품을 인도받은 후 물품검사를 가능한 한 빨리 수행해야 신속한 클레임 제기는 물론 관세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세평가와 관련해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물론 원고는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세평가에서도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보면, 우선적으로 계약내용이 다른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WCO 연구 1.1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 1.1에서는 중고자동차의 관세평가에서 다뤄져야 할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상황은 매매계약한 자동차가 중간에 사용되지 않고 구매한 대로 수입되는 경우다. 두 번째 상황은 자동차가 구매한 이래 추가적으로 사용(주행 등)된 후 수입된 경우다. 첫 번째 상황은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해 제1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상황은 구매한 이래 사용된 자동차의 관세평가목적상 최종 판매된 때와 동일한 자동차로 여전히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다. 만일 그렇게 간주될 수 없다면 관세평가시점에 그 상태의 자동차에 대해 실제지급가격은 존재하지 않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과세물건의 멸실, 반환, 폐기 등도 광의적인 '소비'로도 볼 수 있다.

WCO 연구 1.1에서 매매계약한 물품과 수입신고한 물품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평가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동일성이 있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해 제1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동일성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품질에 하자가 있는 물품을 매매대상물품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즉 품질에 하자가 없는 정상물품을 매매물품으로 계약한 점에서 하자 있는 이 사건 물품 간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상물품이라면 그의 대가는 실제지급가격으로 존재할 것이지만,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 대가가 지급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지급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점은 WCO 해설 3.1(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물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정산금액은 세관이 수입 시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감액된 가격(a price reduced by reason of damage at importation)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보험업자와 수입자 간에 개별 사안으로 취급되는 손상에 대한 보상 때문에 비록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변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물품가격은 수입된 상태를 기초로(on the basis of their condition as imported)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5] 즉, 해설 3.1은 불량품에 대한 보험처리가 돼 구매자에게 손해가 없고 실제지급가격에 증감이 없다 하더라도 물품가격은 그 실제지급가격이 아닌, 수입된 상태를 기초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수입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6] 이 판례는 WCO 해설 3.1에서 설명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 대법원은 WCO 해설 3.1 등을 고려해 해당 판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물품과 같이 동일한 하자가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제4방법의 경우 이 역시 하자가 있는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물품은 반송했으므로 국내판매가격을 구할 수 없다. 제5방법 역시 하자가 있는 물품의 생산원가를 산출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합리적인 평가방법인 제6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거래당사자 간의 클레임청구금액이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및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 등을 과세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

5) WCO 해설 3.1 Ⅰ. 손상된 물품의 경우 (B) (8) (b) (iii) 보험정산금액에서 발췌

6)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도2006 판결

Ⅵ. 맺는말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물품을 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했으나 세관장의 품목분류 오류 정정으로 무려 WTO 미추천세율 385.7%를 부과받아 막대한 관세 부담을 안게 됐다. 그리고 이 사건 물품의 하자가 발견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도 못한 채 일본으로 반송까지 함에 따라 더욱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세관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가능한 추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 비록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낮출 수 없다 하더라도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이 사건 물품이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주장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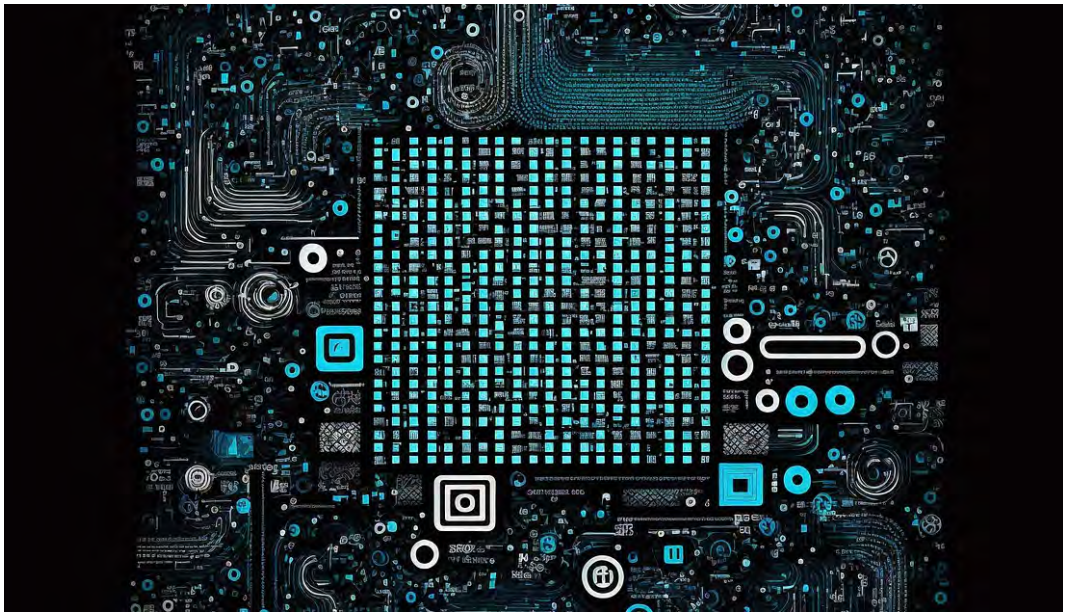
반도체 공정 중 CMP 공정에 사용하는 Polishing Pad의 품목분류

- 2025년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심 난 섭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Ⅰ. 개요

반도체는 현대 정보기술의 핵심 부품이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고도의 정밀도와 청정성을 요하는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이다. 반도체의 8대 제조공정은 웨이퍼를 제조하고 산화 및 박막 형성(절연층 및 도전층을 형성), 포토리소그래피(회로 패턴을 형성), 식각(불필요한 부분 제거), 이온주입(도핑을 통해 전기적 특성을 부여), 박막 증착, 평탄화(표면을 평탄화하는 CMP 공정), 패키징(칩을 기판에 실장)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이번 호에서는 평탄화 공정, 즉 CMP(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공정과 폴리싱패드(Polishing Pad)의 역할을 살펴보고 Polishing Pad의 품목분류 쟁점 및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을 살펴보겠다.

CMP는 반도체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으로 화학반응(Chemical)과 기계연마(Mechanical)를 동시에 사용해 웨이퍼의 고저 차를 제거해 다음 공정의 정밀도를 높여 준다. 반도체 다층 구조의

정확도 확보나 불량률 감소, 전기적 누설 방지를 위한 핵심 공정이라 할 수 있다.

CMP 공정은 화학적 연마제(Slurry)로 막질을 연질화한 후 기계적 압력과 패드 회전을 통해 평탄화가 이뤄지며, 구성요소는 지지대(플래튼), 연마 패드(다공성 폴리우레탄), 캐리어(웨이퍼 고정 장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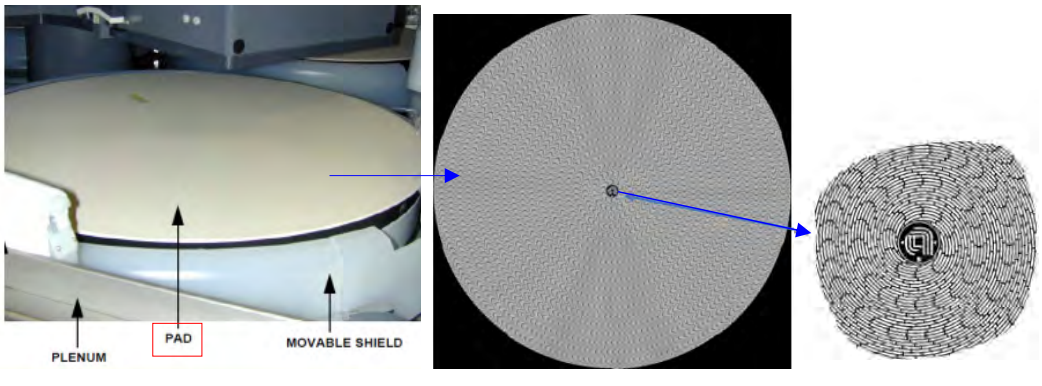
CMP Polishing Pad는 웨이퍼 표면을 균일하게 연마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① 기계적 연마 작용, ② 화학 반응 촉진, ③ 슬러리 공급 및 유지, ④ 연마 부산물 제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패드 표면에는 그루브(Groove)가 형성돼 있는데, 이 그루브로 인해 슬러리가 패드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되며, 연마 중 발생한 폐기물 및 입자 제거, 마찰로 인한 열 배출, 패드와 웨이퍼 간 압력 불균형 최소화를 통해 연마 균일성 확보가 가능하다.

CMP Polishing Pad는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패턴 미세화 및 결함을 줄여주는 공정으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CMP 공정에 사용되는 Polishing Pad의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품목분류의 쟁점과 변경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쟁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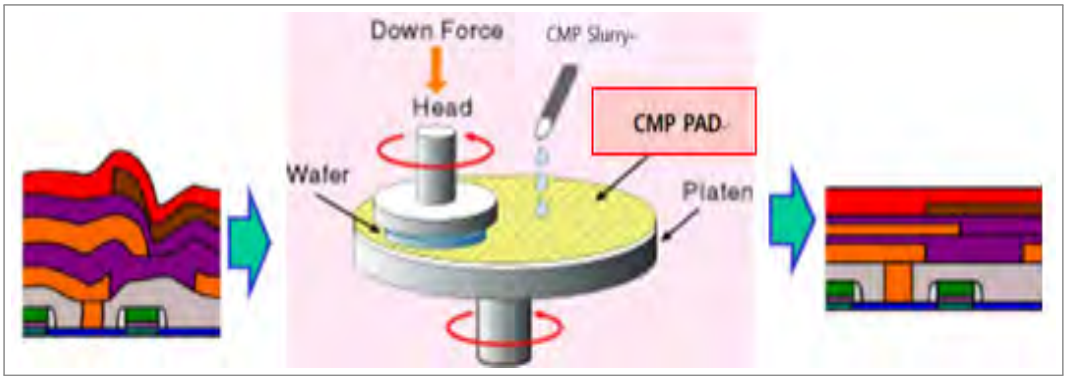
1. 쟁점물품 : CMP Polishing Pad ; Dimension Polishing Pad

● 쟁점물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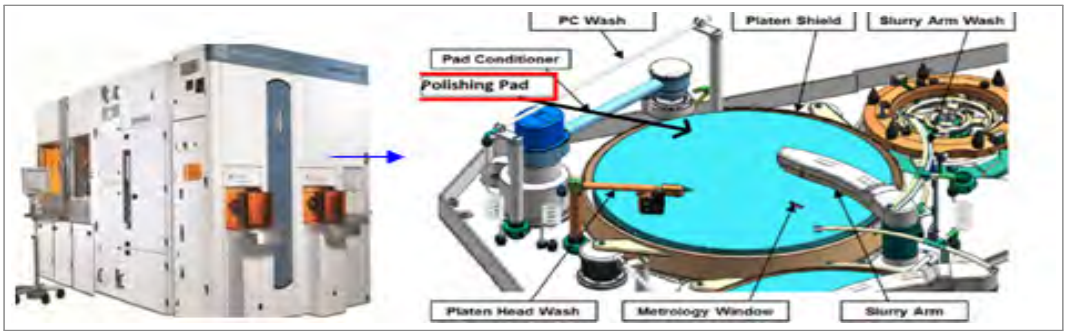


Before After

● 쟁점물품 기능 ●



● 장비 안쪽에 장착된 이미지 ●



1) 물품 개요

반도체 제조공정 중 CMP 공정*에서 웨이퍼와 직접 접촉해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기 위한 폴리우레탄 재질의 원형 패드(일명 'CMP 패드')로, 뒷면에는 접착 필름이 부착돼 있고, 표면에는 2.03㎜ 피치를 가진 약 10㎜ 길이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나선형 그루브(Spiral Groove)**가 형성돼 있다.

*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 반도체 회로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층의 배선과 층간 절역막 등이 반복적으로 쌓일 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다음 층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화학물질과 연마제를 활용해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

** 연마제(slurry)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가공된 홈을 말하며, 패턴은 프로그래밍에 의해 생성됨.

(구성) CMP 패드는 2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연마층(polish layer)은 연마제(slurry) 이송 및 웨이퍼 연마를 위해 특정 경도·표면 거칠기·돌기·그루브 패턴에 맞게 디자인돼 있고, 기초층(backing layer)은 연마 과정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흡수하고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한 견고한

층으로 돼 있다.

(규격) ① 지름 764㎜·두께 2.4㎜·경도 36D, ② 지름 764㎜·두께 1.88㎜·경도 40D

(교체 주기) 웨이퍼 2만개 사용 후 교체(사용 및 환경에 따라 변동)

2) 작동 원리

장비의 플래튼(Platen) 표면 위에 패드를 부착시키고 웨이퍼를 고정해 패드 위에 위치시키면, 패드와 웨이퍼가 직접 접촉해 웨이퍼 표면의 산화피막이 제거되고 패드 표면에 형성된 미세한 나선형의 홈(Groove)으로 연마제(Slurry)가 분산돼 웨이퍼 표면을 화학적으로 연마한다.

2. 쟁점사항

반도체 제조를 위한 CMP 공정에서 웨이퍼를 연마하는 폴리우레탄 원형 패드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으로 봐 제3919.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3926.90-9000호에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봐 제8486.90-2090호에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Ⅲ.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논의 및 결정 사항

1. 제3919.90-0000호에 분류한다는 논지

관세율표 제8466호* 해설서에서 “(a) 제6804호의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연마용 물품”을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제6909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16부 총설에서 “펠트패드와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를 이 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금속, 광물성 물질, 경질물 등의 가공용 공작기계(연마기, 연삭기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호(heading)로, HS 2007 개정 전에는 이 호에 CMP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 분류

또한, 「정보기술협정 확대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일명 ‘ITA-E’) 부속서 B. 197 ‘Self-adhesive circular polishing pad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wafers’의 양허 물품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서는 HSK 제3919.90-0000호로 규정하고 있다.

본 물품은 패드가 닳으면 교체하는 소모성의 물품으로 웨이퍼의 표면을 평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마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위 해설서 규정과 같이 제16부가 아닌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919.90호에는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롤모양인 것을 제외한 ‘기타’를 세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39류 총설에서 “표면 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제3909호에 분류되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원형의 패드로, 표면가공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원형이고 접착성 있는 평면 모양의 것이므로 제3919호에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평면 모양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했다.

2.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는 논지

관세율표 제8466호* 해설서에서 "(a) 제6804호의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연마용 물품"을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제6909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16부 총설에서 "펠트패드와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를 이 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금속, 광물성 물질, 경질물 등의 가공용 공작기계(연마기, 연삭기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호(heading)로, HS 2007 개정 전에는 이 호에 CMP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 분류

또한, '갑론'의 설명과 같이 'ITA-E 부속서 B. 197'의 양허물품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서는 재질 특정 호로 규정하고 있다.

본 물품은 패드가 닳으면 교체하는 소모성의 물품으로, 웨이퍼의 표면을 평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마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위 해설서 규정과 같이 제16부가 아닌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를 세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건 물품은 기능 측면에서 본질적인 기능이 접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형성된 나선형 그루브에 있고, '플라스틱인 제3909호의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3926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3. 제8486.90-2090호에 분류한다는 논지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했다.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소호 제8486.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A) 보울이나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그룹에서 "(6) 화학적·기계적 광택기(CMP : chemical mechanical polisher) : 화학적인 제거와 기계적인 버핑(buffing) 연마가 같이 수행되어 웨이퍼의 평면을 평탄하게 하고 연마하는 기계"를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로 예시하고 있다.

본 물품은 웨이퍼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고 연마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인 CMP 기계에 장착되는 패드로, 표면에 나선형 그루브가 형성돼 있고 기능과 형상 측면에서 CMP 기계에만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486호 기계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또한, 제16부나 제84류 주(note)에서 소모성 물품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제8486호에서 연마용 물품을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본건 물품이 소모성 연마용 물품이어도 제8486호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2090호에 분류했다.

Ⅳ.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제8486.90-2090호에 분류

1.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해설

그간 CMP 패드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패드가 닳으면 교체하는 소모성의 물품으로 웨이퍼의 표면을 평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마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제39류에 분류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평면 모양인 것으로 봐 제3919.90-0000호에 분류하거나, 본 물품의 기능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기능이 접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형성된 나선형 그루브에 있으므로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3926.90-9000호에 분류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2025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CMP 패드에 대해 웨이퍼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고 연마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인 CMP 기계에 장착되는 패드로, 표면에 나선형 그루브가 형성돼 있고 기능과 형상 측면에서 CMP 기계에만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486호 기계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논지로 제8486.90-2090호에 분류했다.

그간 관세율표 제8466호에서 제외되는 "제6804호의 그라인딩휠과 기타 이와 유사한 연마용 물품"과 기능적인 면에서 '연마'라는 관점과 '소모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해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으나, 본 위원회 결정에서 "소모성 연마용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해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더불어 그간 제3919호와 제3926호에 분류되던 Polishing Pad를 모두 변경고시했다.

631. Polishing pa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33호(2025.7.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 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olishing Pad	심사정책과-100016 ('05.02.19.)

ㅇ 물품 설명
- 반도체 제조공정 중 웨이퍼를 연마하는 패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90호
ㅇ 변경 사유
- 반도체 제조장비인 CMP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486.90-2090호에 분류(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Polishing Pad의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23	**검토서번호**	0072025002178
시행일자	2025년 5월 30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86.90-2090호 관세율표 해설서		
경합세번 내용	제3919.90-0000호 제3926.90-9000호 제8486.90-2090호		
연도	2025년		
회	03		
품명	CMP Polishing Pad ; Dimension Polishing Pad, 322A2 ; 0042-53603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반도체 제조공정 중 CMP 공정*에서 웨이퍼와 직접 접촉해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기 위한 폴리우레탄 재질의 원형 패드(일명 'CMP패드')로, 뒷면에는 접착 필름이 부착돼 있고, 표면에는 2.03㎜ 피치를 가진 약 10㎜ 길이의 세그먼트로 구성된 나선형 그루브(Spiral Groove)**가 형성돼 있음. *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 반도체 회로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층의 배선과 층간 절역막 등이 반복적으로 쌓일 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다음 층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화학물질과 연마제를 활용해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 ** 연마제(slurry)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가공된 홈을 말하며, 패턴은 프로그래밍에 의해 생성 ㅇ 규격 ① 지름 764㎜·두께 2.4㎜·경도 36D, ② 지름 764㎜·두께 1.88㎜·경도40D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6.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 보울이나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그룹에서 "(6) 화학적·기계적		

광택기(CMP : chemical mechanical polisher) : 화학적인 제거와 기계적인 버핑(buffing) 연마가 같이 수행되어 웨이퍼의 평면을 평탄하게 하고 연마하는 기계"를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로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반도체 제조장비인 CMP 기계에 장착돼 웨이퍼의 표면을 평탄화하고 연마하기 위한 패드로, 표면에 미세한 나선형 그루브가 형성돼 있는 등 기능과 형상 측면에서 CMP 기계에만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486호 기계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2090호에 분류함.

2. 품목분류 시사점

Polishing Pad는 나노미터단위의 오차도 불량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루브 역시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정밀도가 낮으면 슬러리 막힘이나, 평탄도 불균일이 발생할 수 있고 수율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위원회 결정은 CMP Polishing Pad에서 그루브(Groove)의 정밀도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라인딩휠과 기타 이와 유사한 연마용 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본 사례가 할 수 있으며, 또한 '소모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정밀성 등 물품의 작동과 관련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물품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다.

아울러 CMP 장비 헤드에 장착돼 ① 웨이퍼를 흡착해 헤드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역할, ② 연마 헤드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웨이퍼 표면에 균일하게 전달, ③ 웨이퍼와 연마 패드 사이의 슬러리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체해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인 '멤브레인(MEMBRANE)'의 경우 재질에 따라 제3926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이전 품목분류 사례에서 교체해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이 소모성이라는 이유로 재질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소모성이라는 하나의 관점만은 아니고, CMP 공정에서의 기능, 역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목분류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하이볼 분류 사례

- 2024년도 제5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김 홍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속에서 술을 즐기는 문화가 변하고 있다. 과거 회식 자리에서 소주·맥주를 연거푸 마시던 모습은 줄어들고, 한 잔을 마셔도 취향에 맞는 술을 고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 중심에는 위스키와 탄산수를 섞어 만든 칵테일 '하이볼'이 있다.

하이볼은 18세기 탄산수 제조법이 개발된 뒤 영국 상류층이 브랜디에 탄산수를 타 마신 데서 비롯됐다. 이후 19세기 나폴레옹 전쟁과 포도나무 해충 피해로 브랜디 대신 위스키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920년 미국의 칵테일 제조자 패트릭 더피가 길쭉하고 높은 잔에 이 술을 내놓으며 '하이볼'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후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거쳐 세계적으로 퍼졌다.

팬데믹 기간 '집콕' 문화와 함께 혼술·홈술이 유행하면서 하이볼이 특히 MZ 세대의 호응을 얻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위스키 수입량은 2019년 약 2만t에서 2020·2021년 감소했으나, 2022년 2만 7,038t, 2023년 3만t을 돌파하며 급증했다. 2024년에는 2만 7,440t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 중이다.

위스키는 과거 '아재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MZ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토대로 '힙한 술'로 재평가됐다. 특히 고가 제품 중심이던 시장에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이 늘면서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하이볼은 높은 도수의 위스키에 탄산수와 레몬·라임을 더해 위스키 특유의 향과 청량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도수도 10도 미만으로 부담이 적다는 요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과일·허브·시럽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개인 취향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 위스키는 개봉한 이후에도 다음번에 마실 수 있다는 점 등도 인기 요인이다.

이번 호에서는 위스키에 탄산수를 첨가해 제조한 주류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소개한다.

2. 분류 사례

○ 물품 개요

- 스카치 위스키(몰트, 그레인), 탄산, 물을 혼합해 조제한 연한 미황색 액상을 알루미늄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0㎖)
- 구성 성분 : 스카치 위스키 18.7%, 물 76%, 탄산가스 5.3%
- 가격 비율 : 스카치 위스키 99.6%, 물 0.1%, 탄산가스 0.3%
- 알코올 함량 : 약 8%(v/v), 불휘발분 : 2도 미만
- 용도 : 음용
- 제조공정 : 원재료 → 여과 → 물, 탄산가스 혼합 → 여과 → 충전 → 살균 및 냉각 → 포장 → 중량 검사 → 출하

■ 유럽(EU) 통합품목분류표에 대한 해설
위스키류
위스키는 갈아 으깬(mash) 곡물에서 증류한 증류주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40% vol 이상이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담아 판매한다.
스카치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증류하고 숙성한 위스키다.
탄산수를 첨가한 위스키(위스키-소다)는 이 소호에서 제외하며, 소호 제2208.90.69호나 제2208.90.78호에 해당한다.

그 밖의 주정음료
제2208호 HS 해설 세 번째 단락 (14)부터 (18)까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정음료 외에도, 이 소호에는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1. **탄산수를 첨가한 주정음료(예를 들어, 위스키-소다)**
2. 알코올을 함유한 차(tea)
3. 주정음료를 서로 혼합한 것이나 주정음료와 과실 주스나 채소 주스를 혼합한 것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2208.90-900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 용량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주정(에틸알코올과 중성주정)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이고 앞에서 설명한 (A)·(B)·(C)와는 반대로 향미(香味)와 방향(芳香)을 주는 2차성분의 결핍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되는 것도 분류한다. 이러한 주정은 공업용인지 음료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위스키를 기본 재료로 해 제조된 물품이므로 제2208.30호(위스키류) 분류 여부를 검토해 보면 알코올 함량이 약 8%로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 국외 위스키의 일반적인 알코올 도수 함량에 비해 낮고, 탄산을 첨가해 위스키와 상이한 특성을 갖는 물품이다.

참고로, WCO 상품 DB에는 'Whisky-Soda'를 제2208.90호로 분류하고 있고, '유럽 통합품목분류표에 대한 해설'에도 위스키에 탄산수를 첨가한 경우 그 밖의 주정음료로서 제2208.90호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주정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 <후략>
류	(제22류) 음료·주류·식초
호	(제2208호) <전략> …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HSK	(제2208.90-9000호) 기타-기타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2208.90-9000호
품명	SCOTCH WHISKY HIGHBALL LEGENDARY SCOT; 350ML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스카치 위스키(몰트, 그레인), 탄산, 물을 혼합해 조제한 연한 미황색 액상을 알루미늄제 캔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350ml) - 구성 성분 : 스카치 위스키 18.7%, 물 76%, 탄산가스 5.3% - 가격 비율 : 스카치 위스키 99.6%, 물 0.1%, 탄산가스 0.3% - 알코올 함량 : 약 8%(v/v), 불휘발분 : 2도 미만 - 용도 : 음용 - 제조공정 : 원재료 → 여과 → 물, 탄산가스 혼합 → 여과 → 충전 → 살균 및 냉각 → 포장 → 중량 검사 → 출하 ※ 위스키의 알코올 도수(출처 : www.Alcoholrehabguide, www.whisky.com, 나무위키) ※ 식품 유형 판단 관련 국민신문고 답변(신청인 문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답변) : 문의하신 제품은 위스키, 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불휘발분 2도 미만으로 제조한 주류로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스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유럽(EU) 통합품목분류표에 대한 해설 위스키류 위스키는 갈아 으깬(mash) 곡물에서 증류한 증류주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40% vol 이상이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담아 판매한다.

스카치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증류하고 숙성한 위스키다.
탄산수를 첨가한 위스키(위스키-소다)는 이 소호에서 제외하며, 소호 제2208.90.69호나 제2208.90.78호에 해당한다.

그 밖의 주정음료
제2208호 HS 해설 세 번째 단락 (14)부터 (18)까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정음료 외에도, 이 소호에는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1. 탄산수를 첨가한 주정음료(예를 들어, 위스키-소다)
2. 알코올을 함유한 차(tea)
3. 주정음료를 서로 혼합한 것이나 주정음료와 과실 주스나 채소 주스를 혼합한 것

관련 이미지





마사지볼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직장인은 중간중간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때 사무실 등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마사지볼은 손, 발, 어깨 등 이곳저곳 결리는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도구다.

마사지볼은 뭉쳐있는 부위를 지압해 근육통을 줄여준다. 다만 처음부터 딱딱한 마사지볼을 쓰면 오히려 심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한 볼로 압박하면 근막의 수축 및 이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마사지볼로 심하게 문지르는 등 마사지하면 멍이 드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사지볼은 아침에 일어나 근육이 경직됐을 때 15~20분간 하면 적당하다.

이번 호에서는 마사지볼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TPR(Thermo Plastic Rubber)과 Polymer 재질로 이뤄진 구형의 마사지볼로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인 제9506.69-9000호로 신고했다.

먼저,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을 분류하며, 제9506.6호에는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운동용품의 예로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을 제외한다)[예: 테니스공·축구공·럭비공·**이와 유사한 공**(공의 공기주머니와 커버(cover)를 포함한다) ; 수구·야구·이와 유사한 밸브식의 공 ; 크리켓공]"을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의 경우 공의 형태를 하고 있고, 반복된 동작과 자극을 통해 근력을 증강하고,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등의 육체적 운동의 효과를 가지기도 하나, 주된 목적은 운동 전후 신체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마사지 목적의 사용 물품에 가깝다.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에서는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 <중략> …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을 마사지용 기기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MASSAGE BALL	9506.69-9000 (A 8%)	Massage apparatus	9019.10-2000 (A 8%)

뜨거운 햇빛에 늘어나는 양산 쓰는 남성들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올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며 역대급 더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냉방기구의 과도한 사용으로 전기 화재까지 발생하며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렇게 햇볕이 뜨거운 날이 계속되자 길거리를 다니는 남성들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겼다. 귀찮다는 이유로 양산 쓰기를 멀리했던 남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찌감치, 2018년부터 남성 양산 쓰기 운동이 일었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격인 일본 환경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양산 보급 활동에 나섰고 2019년에는 환경성이 6월 16일 아버지의 날에 양산을 선물해 열사병을 예방하자는 캠페인까지 열었다.

이렇게 당국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2023년 월간지 닛케이트렌디 히트상품에는 남자 양산이 14위에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정부를 중심으로 양산 사용을 권장하는 추세다. 일명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 불릴 정도로 무더위로 유명한 대구는 2020년부터 양산 대여소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160여 개로 규모를 확장했는데 여기엔 남성용 양산까지 갖췄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21년 양산의 사전적 의미를 바꿨다. 기존 양산의 의미는 주로 여성들이 볕을 가리기 위해 쓰는 우산 모양의 큰 물건이었는데, '주로 여성들'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여러모로 이제는 양산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 누구나 사용하는 물품이라 볼 수 있다.

관세율표에서 우산이나 양산은 모두 제6601호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와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에 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완구류나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하도록 명백히 제작한 종류의 산류(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를 분류하며 … <중략> … 각각의 구성부품(부착한 부속품과 장식품을 포함한다)을 만드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후략>"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 해설서에서 산류(傘類)나 우산형 텐트의 특성이 아닌 비치 텐트는 제6306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44호_2025.8.25.

최신개정법령

고시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훈령

-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행정예고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42호, 2025.8.18.)

◇ 개정 사유 ◇

□ 자료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담보제공 대상 관련 규정 추가, 생략 중지 사유 신설 및 중지 사유 발생 통지 세관 명확화

□ 관련 훈령 및 근거 조항 변경 등에 따른 규정 정리

◇ 주요 개정내용 ◇

□ 자료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담보제공 대상 관련 규정 추가, 생략 중지 사유 신설 및 중지 사유 발생 통지 세관 명확화

- ㅇ (§35)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시 담보생략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ㅇ (§42) 자료 미제출로 인한 담보생략 중지 발생 통지 세관의 명확화

□ 관련 훈령 및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리

변경 전	변경 후
(§21)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21)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39, §41, §42) 제7호 나목	(§39, §41, §42) 제7호 라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5호, 2025.8.22.)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5호(2025.4.24.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당초 2025.4.24.~2025.8.23.(4개월)에서 2025.4.24.~2025.11.23.(7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 ㅇ 관세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91
	2.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62
	3. 샹탄스틸(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4. 사이노 인터내셔널(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5. 샤먼 아이티지(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6. 그 밖의 공급자	31.69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4.24. ~ 2025.8.23. (4개월)
(변경) 2025.4.24. ~ 2025.11.23.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훈령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관세청훈령 제2420호, 2025.8.18.)

◇ 제정 이유 ◇

□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

□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협의회) 설치 및 기능
- ㅇ 관세청 소관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해 협의회 설치
- ㅇ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 협의회 구성
- ㅇ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ㅇ 위원장은 관세청 국어책임관(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

□ 협의회 운영
- ㅇ 연 1회 이상 개최(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 개최)
- ㅇ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서면으로 개최 가능)
- ㅇ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지명하고,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 구성 가능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예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9, 2024.9.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2025.9.10.(수)까지 회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9호, 2024.9.9.)

2. 개정 사유

□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신고물품 신규지정

□ 유통이력조사 규정 보완 및 「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유통이력 신고물품 신규지정('별표 1' 개정)

○ 관계부처합동 「철강산업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과제로 '유통이력 신고물품 확대'가 채택(2025.3.19.)되었으며,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무계목강관'을 신규 지정함.

□ 그 밖의 개정 사항

○ 유통이력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조사 절차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

○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4항 개정(2023.12.31.)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 에이치(H)형강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정정(별표1)

* 2024.9.1.~2026.8.31. → 2024.9.1.~2026.7.31. (2024.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반영)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생략]

5. 시행일자 : 2025.10.00.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당자 : 홍석환 사무관(042-481-7984), 정미희 주무관(042-481-7896)
- 제출기한 : 2024.9.10.
- 제출방법 : E-mail(pollen@korea.kr)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1 최신 기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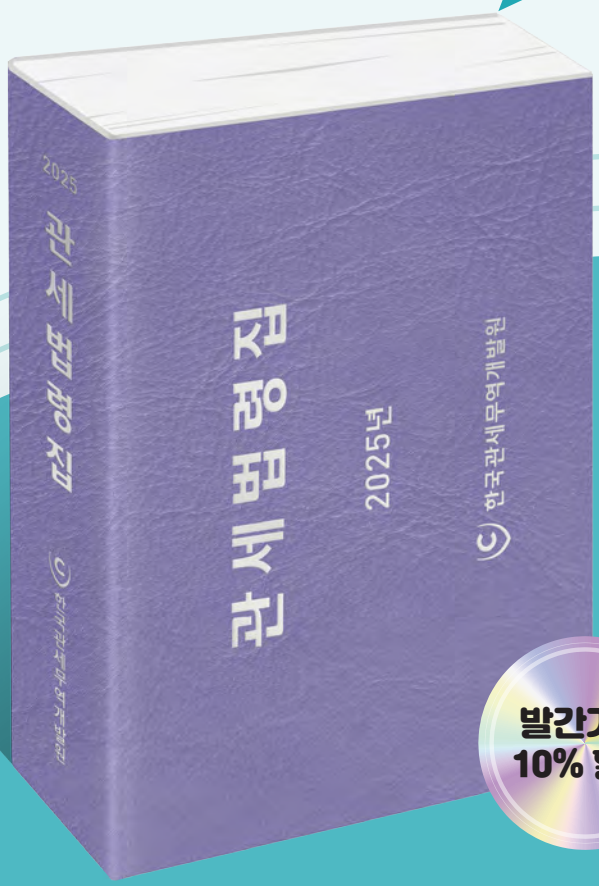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